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3.11.16]
(전부개정) 2023.11.16 훈령 제396호

관리책임부서명 :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880-71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동군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하동군 소속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하동군에 근로를 제공하는 군 소속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 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수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군수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둔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군수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및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명예 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③ 명예 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명예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자 위원

가. 대표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위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부서장

2. 근로자 위원

가. 대표위원: 근로자 대표

나. 위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담당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중 1명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을 통한 심의·의결로 대체되어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위원회 회의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차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이 의결되지 않으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장
2. 안전·보건 대행업체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자격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대상자,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근로자: 분기별 3시간 이상
2. 현업업무 상시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나목과 같다.

제24조(신규 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시에는 작업 투입 전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직무 수행으로 현업업무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6조(특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직 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 근로자: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근무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기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24시간 이상

③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기록·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교육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30조(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전 부서에 알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방호조치) 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영 제70조에 따라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교부받은 검사확인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안전인증)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기구·설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4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의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조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고 수시로 순찰한다.

제39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차량의 점검정비 적정 여부
6.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4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사용부서의 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군이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건강 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4조(유해요인조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간·작업 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2.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직원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③ 유해요인 조사 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직원과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관리감독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리요령을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유해요인발생 부서의 보건수칙) 유해 요인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보건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다.

-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제1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른 질병 등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 또는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 및 영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고조사 업무 담당자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휴게시설 설치·운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기준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제53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54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군수는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6조(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군수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발주 공사시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원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응급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발생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석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0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된 재해의 원인을 찾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위험성평가

제61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가.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한 경우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3조(위험성평가 절차) ①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업무 내용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4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5조(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 최소 보존기한은 제62조에 따른 실시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장 보칙

제66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67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법 제164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른 서류는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6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9조(안전·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